
2019년도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추가 선발(일시지원) 업무처리지침

2019. 11.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목 차

I. 추진 및 지원 개요

| | |
|-------------------------|---|
| 1. 배경 및 필요성 | 3 |
| 2. 추진 근거 | 3 |
| 3. 추진 경과 | 3 |
| 4. 일시 지원 배정 인원(안) | 3 |
| 5. 지원 금액 | 3 |
| 6. 지원 기간 | 3 |

II. 추가 선발(한 학기 지원) 방안

| | |
|---------------------|---|
| 1. 대학 참여 | 4 |
| 2. 배정 기준 | 4 |
| 3. 선발 기준 및 대상 | 5 |
| 4. 선발 절차 | 8 |

III. 장학금 지급 및 반환

| | |
|-----------------------------|---|
| 1. 장학금 지급 | 9 |
| 2. 장학생 자격 상실(박탈) 및 반환 | 9 |

IV. 사업 운영 관리

| | |
|------------------------|----|
| 1. 중복 지원 상세 기준 | 10 |
| 2. 학적 변동 시 조치 사항 | 11 |
| 3. 사후 관리 | 11 |
| 4. 대학원 의무 사항 | 12 |
| 5. 향후 추진 일정 | 12 |

[참고1] 제출서류 총괄표

13

[참고2] 대학원별 자체 선발 기준 수립 가이드라인

25

[참고3]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26

[참고4] 신청인 동의서

32

I 추진 및 지원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인문사회분야의 우수한 석·박사 과정생을 지원하고 동 분야 연구 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력 증진을 도모

2.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2019년도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3. 추진 경과

- '19.3.25. : 시행 계획 및 사업 신청 안내
- '19.5.30. : 대학별 장학생 선발 및 추천 완료
- '19.6.27. : 19년 1학기 장학금 지급
- '19.9.30. : 19년 2학기 대학별 계속 장학생 추천 완료
- '19.10.7. : 19년 2학기 장학금 지급

4. 한 학기 지원 배정 인원(안)

| 구 분 | 인문 · 사회계 | 예술 · 체육계 | 계 |
|-------|----------|----------|------|
| 신규장학생 | 163명 | 41명 | 204명 |

※ (계열별 배정비율) 인문·사회계 : 예술·체육계 = 80% : 20%

5. 지원 금액

-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 최대 400만 원
 -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6. 지원 기간

- 2019년 2학기 1개 학기 지원

II 추가선발(한 학기 지원) 방안

| | | | | | |
|-------|-------------------------------|-----------------------|--------------------------|----------------|-------------------|
| 구분 | [재단] 수요조사 및 선발 규모 배정 | [대학] 장학생 선발 | [학생] 장학금 신청 | [재단] 최종선정 | [재단] 장학금 지급 |
| 주요 내용 | 추가선발 참여여부 조사 후 대학별선발 인원 배정 | 추가선발 대상자 추천 | 대학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실시 | 장학생 최종 선정 및 발표 | 장학금 지급 |
| 일정 | ~'19.11.29. | '19. 12. 2. ~ 12. 13. | | '19 12. 20. | '19 12월 말 |

※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1. 대학참여

대상 대학

- 2019년 1학기 대학원생지원 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대학 중 배정 인원 대비 선발 인원 100% 충족 대학

* 대학원 추천 기준(휴학, 장학금 포기, 기타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은 인원 포함)

신청 방법

- 인재육성계획서(한 학기 지원 유형)에 선발기준 및 지원계획 등을 포함 ([양식1] 참고)

2. 배정 기준

- 2019년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 대학별 신규 장학생 배정 인원 대비 선발 비율, 계열별 재적생 수 및 전년도 동 사업 선발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되 계열별 선발 비율(인문사회계 : 예술체육계=80%:20%) 적용

$$\text{대학별 배정인원} = [\{ (A/\sum A) \times 0.5 \} + \{ (B/\sum B) \times 0.5 \}] \times \text{한 학기 지원 선발 가능 인원}$$

- * A: '19년 신규장학생 선발 시 배정 인원 대비 선발 비율 100% 충족대학 대학원생 재적생수
- * B: '19년 신규장학생 선발 시 배정 인원 대비 선발 비율 100% 충족 대학의 '18년 선발 실적(신규참여 대학원은 기참여대학원의 최저값 적용)

< [참고] 배정인원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안 >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합계가 배정가능 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낮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차감
 - ▶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내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추가
 - ▶ (동점대학 가감처리)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3. 선발 기준 및 대상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일반대학원(한국학대학원 포함)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주1)} 대학원생 중 저소득층^{주2)} 또는 미취업자^{주3)}

주1) 대학원별 학과계열 분류체계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체육 계열 판단

주2) '19.11.1.이후 본인명의로 발급된 저소득층 증빙자료([참고1] 참고)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자

주3) '19.11.1.이후 발급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상 4대보험 미가입자(단, 주 6시간 이내 근무로 인한 4대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미취업자로 인정)

- '19년 1학기 장학생 선발 당시 배정 인원 대비 100% 선발 비율을 충족한 대학의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인자 선발 가능

< 신규장학생 선발 필수요건 >

-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또는 평점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 백분위 점수 또는 평점 둘 중 하나의 성적기준 충족 시 지원
 - 성적 산출기준
 - 평점: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예: 4.01/4.5만점기준)
 - 백분위: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예: 91.9인 경우 91로 산출(성적기준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 [중복지원 여부] BK21+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형 사업 연구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
 - * 근로성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 지원 포함
- ※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장학생 대상 BK21⁺ 등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수혜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오선발 사례 발생 시 선발취소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 예정

**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확인서,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강사확인서, 출강 6시간 이하 증빙 서류(기타 선발에 필요한 서류는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대학별 관리)

□ 제외대상

- 정규 과정 첫 학기 및 휴학생 지원 불가
-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선발 제외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등록금 학생부담분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대학원생지원 장학금 지원 가능

※ 해당 장학금 신청기간 내 미신청하거나,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을 선택하더라도 대학원생지원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기준 및 대상

- 대학원생지원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 선정된 후보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후보자가 없을 시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 선발·추천된 자

※ 추가 선발 시 후보자군 위주로 우선 추천

□ 대학원별 배정인원 범위 내 지원 자격(성적, 중복지원 등) 충족자 중 대학원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 대학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기준 마련 및 투명한 선발·추천 절차를 수립하여 학생별 연구분야 심사 및 선정

< 자체선발기준 가이드라인 >

- ▶ 대학원생 학업수행 의지(30점), 연구계획 우수성(60점), 학문의 파급효과(10점)
- ▶ 사회적 배려 대상자(탈북자,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가구 등)의 경우 우선선발 권고

□ 선발 시 유의사항

- 두 개 이상의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재학 시, 1개 과정에 한해 지원 가능
- 석사 및 박사과정 동시 재학 시 박사과정에 한해 지원 가능
-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재학 시 대학원생지원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 학위 과정을 재학할 경우 장학금 지원 불가
- BK21⁺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형사업 연구장학금(근로성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 지원 포함)을 수혜하고 있는 학생은 선발 불가
- 타 장학금 수혜로 대학원생지원 장학금 지원 시 중복지원(등록금 초과 수혜)이 발생할 경우 대학원생지원 장학금 지원 불가
※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의 경우 포함), 대학원생지원 장학생으로 선발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환 후 최종 지원. 단, 학기별 등록금이 최대 지원 금액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에 한해 타 장학금 및 대출 허용

□ 지원내용

- 추가 지원(한 학기 지원)으로 선발 시 2019년도 2학기 등록금 범위 내 최대 400만원 지원(1회)
- 등록금 범위를 벗어나는 타장학금 수혜자는 추천 불가
 -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전액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지급 가능
- ※ 단, 등록금이 최대 지원 금액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 및 대출 허용

4. 선발 절차

- (대학) 인재육성계획서(일시 지원 유형) 제출([양식1] 참고)
- (재단) 대학원별 선발 인원 배정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대학원 생지원장학금 → 배정관리 → “배정현황”에서 배정인원 확인

- (대학원 선발) 배정인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및 명단 업로드
 - 대학원은 선정된 장학생 명단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등록
- * 지원 자격을 충족한 학생 중에서 대학이 자체 심사하여 재단으로 등록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대학원 생지원장학금 → 배정관리 → “배정신청정보조회”에서 등록

- (학생 신청) 대학추천 대상자(선발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확인서(PDF, JPG 등 전자파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화면 내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선택 → 신청하기

○ (대학원 추천) 신청완료자에 대해 장학생 최종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국가연 구장학금(인문사회계) ➔ 신청/추천관리 ➔ “장학생추천”에서 추천

※ 학생신청 및 대학추천 매뉴얼은 별도 공지

○ (재단 심사·확정) 추천 학생의 적합성 여부(미취업여부, 성적 등)를 검토하여 장학생 최종 확정

III 장학금 지급 및 반환

1.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시, 해당학기 재단 내 대출 수혜내역 존재할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 후 대학 지급

※ 대출 상환금 및 대학 지급금액은 재단의 지급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등록금 학생부담분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반환

- 자퇴, 제적, 학사징계, 학교변경, 전과, 휴학(질병, 천재지변, 군입대, 출산 등에 의한 휴학 포함)의 경우, 당해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및 장학생 자격상실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반환

- 대학원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신규장학생 선발과정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반환

IV 사업 운영 관리

1. 중복지원 상세 기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중복지원 범위

| 구분 | 종류 |
|-----------|--|
| 학자금 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
| 장학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 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

| 구분 | 종류 |
|------|---|
| 중복지원 | ① 국가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 예외사항 |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2. 학적변동 시 조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 발생 시 소속대학원 장학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 대학원은 장학생의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에 통보
※ 단, 교환학생은 국내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재학생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 최대 400만 원 지원

3. 사후관리

- 대학원 현장모니터링 점검사항
 - (대학 추천) 신규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유무 및 준수여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 확인 등
※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신규장학생 대상 BK21+ 등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수혜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오선발 사례 발생 시 선발취소 및 기지금 장학금 전액 환수 예정
 -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 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 (수혜장학 상품명) 등
※ 현장모니터링 결과 장학금 지원 부적격자 또는 지원금액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 전액 환수조치 및 해당 대학 매회 실태점검 실시

4. 대학원 의무사항

- 장학생 선발·지원을 위한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평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행
 -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원에서는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며, 재단에 정확한 기준 및 평가결과를 제공
 - ※ 장학생 선발 등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해관계자, 지도교수 등은 제외
 - 장학생 선발 · 추천 · 지급 · 관리에 따른 관련 자료의 확인 및 보관
 - ※ 대학원별 대학원생지원 장학금 관련 자료(서류 및 전산자료)는 10년간 보존
-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대응
-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수시 통보하고, 중복지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

5. 향후 추진일정

- '19.11.8.(금) : (재단) 사업 신청안내
 - '19.11.11.(월)~11.15.(금) : (대학) 사업 신청
 - '19.11.22.(금) : (재단) 대학별 배정인원 안내
 - '19.11.25.(월)~12.10(화) : (대학) 학생 추천
 - '19.11.25.(월)~12.12(목) : (학생) 추천자 온라인 신청
 - '19.11.25.(월)~12.13.(금) : (대학) 추천 대상자 최종 추천
 - '19.12.16.(월)~12.20.(금) : (재단) 대학 추천 대상자 심사 및 확정
 - '19. 12월 말 : (재단) 장학금 지급
- ※ 상기일정은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

참고1
제출서류 총괄표
 필수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 | 제출형태(방법) | 파일형태 |
|----------------------------|--------------------------------|-----|---|------|
| 대학 | 인재육성 계획서 (일시지원유형) | 양식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추가선발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은 「인재육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인재육성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대학에서 제외 | pdf |
| 학생 (학생별 해당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 | | pdf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 pdf |
|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 | | pdf |
|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minwon.go.kr) 하여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대학 제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pdf |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 | pdf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 | pdf |
|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 | pdf |
|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발급하여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대학 제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상 취업여부 확인 또는 동서류 미제출 시 장학생 선발 제외 ※ 상세내용은 ‘참고: 미취업 여부 확인 방법’ 참고 | pdf |

* 제출서류는 대학이 10년간 관리 및 보관

 선택서류(대상자에 한해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형태(방법) | 파일형태 |
|----|---------------|--|------|
| 학생 | 탈북이탈 주민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 대학원생으로 우선선발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대학 제출 | pdf |
| | 장애인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대학원생으로 우선선발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대학 제출 | pdf |
| | 가족관계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및 다문화 가구 지원유형으로 선발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대학 제출 * 대학원생 본인이 셋째아이 이상인 경우 | pdf |

* 학생별 해당서류 미제출 시 장학생 선발 제외 및 제출서류는 대학이 10년간 관리 및 보관

기타서류(대학원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자에 한해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분량) | 제출형태(방법) | 파일형태 |
|----|-----------|----------------|--|----------------|
| 학생 | 학업·연구 계획서 | 양식2 (2장 이내) | ○ 대학원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및 소속 대학원에 제출 | hwp, doc, docx |
| | 지도교수 추천서 | 양식3 | | pdf |
| | 연구논문 실적서 | 양식4 | | hwp, doc, docx |

* 제출서류는 대학이 10년간 관리 및 보관

[참고: 미취업 여부 확인 방법]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하여 미취업여부 확인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불가(R·A 및 T·A로 인한 4대 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상세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유의사항
 - 지역가입자 중 사업장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및 지원 제외
 - 시간강사의 경우, 주 6시간 이내 근무*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하여 미취업자로 인정('19. 1. 1 이후 발급분 인정)
 - * 시간강의 1학기('19.3.1~8.31) 및 2학기('19.9.1~'20.2.28)의 주 6시간 이하(총 출강시간/27주)인 경우, 미취업자로 인정
 - ** 시간강사 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양식 1]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인재육성계획서(일시지원 유형)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인재육성계획서(일시지원 유형)**대학원 기본 정보**

| | | | |
|------|---------------------------------|--------------------|--|
| 대학원명 | | 권역구분 (수도권/비수도권) | * 대학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인 경우 수도권, 나머지는 비수도권으로 기재 |
| 본/분교 | | | |
| 참여분야 | <input type="checkbox"/> 인문·사회계 | | <input type="checkbox"/> 예술·체육계 |

본 대학은 대학원생지원장학사업 선발인원이 배정될 경우, 귀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한 「인재육성계획서」 상의 계획에 따라 재단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우수 대학원생 선발·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대학원생지원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선발인원 감원, 참여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총장 성명 _____(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본문)

인문·사회계열 계획서**1. 장학생 선발기준**

- ※ 대학원 자체선발 기준(동점자 처리기준 포함) 기술
- ※ 사회적 배려 대상자(탈북,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가구 등) 우선선발 기준 기술

2. 장학생 관리방안

- ※ 장학생 선발 후 재학기간 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술·체육계열 계획서**1. 장학생 선발기준**

- ※ 대학원 자체선발 기준(동점자 처리기준 포함) 기술
- ※ 사회적 배려 대상자(탈북,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가구 등) 우선선발 기준 기술

2. 장학생 관리방안

- ※ 장학생 선발 후 재학기간 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양식 2] 대학원생지원장학금 학업·연구계획서

학업·연구계획서

| | | | |
|------|------------------------------------|-----|----------|
| 성명 | 예) 홍길동 | 학교명 | 예) ○○대학교 |
| 학위과정 | 석사, 박사, 통합과정(석사), 통합과정(박사) 중 택1 | 학과명 | |
| 학기 | 2학기~5학기 | 전공 | 예) 국어국문학 |

※ 상단의 인적사항은 신청대상년도 학기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1. 작성내용

- 학업·연구계획서 작성 시 아래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 내용(목차)을 참고하여 작성함

2. 작성기준

- 작성 프로그램 : HWP(아래아 한글)로 작성
- 편집기준(본문내용)
 - 편집용지 : 용지종류는 A4, 용지방향은 좁게, 여백 위 10, 아래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 글자모양 : 글자체 신명조, 소제목 폰트는 12p, 본문내용은 11p,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여백 왼쪽, 오른쪽 0.0pt, 첫줄 보통, 줄간격 160%, 문단 위 0.0pt, 문단 아래 0.0pt

※ 학업계획서 작성 시 위의 『작성 시 주의사항』 글상자 삭제 후 작성

〈학업계획서〉

자기소개, 지원 분야, 지원동기 및 목표, 관심분야, 학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본 페이지를 포함하여 2쪽 안으로 작성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 작성 시 아래 내용(목차)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연구계획서 제목]

- ① 연구배경 및 중요성
- ② 연구목표
- ③ 선행연구 분석
- ④ 연구방법 및 체계
- ⑤ 연구의 특징(독창성, 차별성, 활용·응용성)
- ⑥ 참고문헌(References)

[양식 3]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지도교수 추천서

지도교수 추천서

피 추천자 인적사항

| | | | |
|------|----------|------|------------------------------------|
| 성명 | 예) 홍길동 | 학위과정 | 석사, 박사, 통합과정(석사), 통합과정(박사) 중 택1 |
| 소속대학 | 예) ○○대학교 | 소속학과 | 예) 국어국문학 |

추천 지도교수

| | | | |
|------|------|---------|--|
| 성명 | | 직위 | |
| 소속대학 | | 소속학과 | |
| 연락처 | (전화) | (이메일주소) | |

<지도교수 추천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본 장학 사업은 지도교수 1인당 추천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권고사항)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학생을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_____학과
지도교수 _____(인)

- ※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상)
- ※ 지도교수 확인은 서명 및 도장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4]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연구논문 실적서

연구논문 실적서

| | | | |
|------|------------------------------------|-----|----------|
| 성명 | 예) 흥길동 | 학교명 | 예) ○○대학교 |
| 학위과정 | 석사, 박사, 통합과정(석사), 통합과정(박사) 중 택1 | 학과명 | |
| 학기 | 2학기~5학기 | 전공 | 예) 국어국문학 |

* 상단의 인적사항은 신청대상년도 학기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논문 실적

<작성요령>

- 「논문」 실적 : 아래 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 번호 | 논문명 | 연구기간 |
|----|-----|------|
| 1 | | |
| 2 | | |
| 3 | | |

2. 연구논문 실적 세부내용

<작성요령>

- 「논문」 실적 : 연구논문실적 번호와 동일 순번으로 작성

| 번호 | 게재연월일 | 저자 | | | 학술지명 | Vol.(No.) | 국내외 구분 | 수준 |
|----|-------|--|----------------|------|------|-----------|--------|----|
| | | 저자 (논문표기순) | 교신저자 (지도교수) | 저자명수 | | | | |
| 1 | 년 월 일 | (저자 이름을 순서대로 모두 기재, 논문 이름은 굵게 밝힐 표시)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수준 : 발표된 학술지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 SCI(Impact Factor를 연도와 함께 기재 요망, 기재예 : Nature Materials 誌의 경우 SCI IF: 23.13(2009)), SCIE, SSCI, A&HCI,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등을 기재)

3. 연구논문 실적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작성내용

- 연구논문실적서 작성 시 아래 내용(목차)을 참고하여 작성함

2. 작성기준

- 작성 프로그램 : HWP(아래아 한글)로 작성
- 편집기준(본문내용)
 - 편집용지 : 용지종류는 A4, 용지방향은 좁게, 여백 위 10, 아래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 글자모양 : 글자체 신명조, 소제목 폰트는 12p, 본문내용은 11p,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여백 왼쪽, 오른쪽 0.0pt, 첫줄 보통, 줄간격 160%, 문단 위 0.0pt, 문단 아래 0.0pt
- 기술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실적증빙자료는 별도제출, 페이지 제한 없음)

※ 연구논문 실적서 작성 시 위의 『작성 시 주의사항』 글상자 삭제 후 작성

〈연구논문 실적서〉

- 반드시 5쪽 이상으로 작성함(실적증빙자료 분량은 제외)
- 연구논문실적서 작성 시 아래 내용(목차)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연구논문 제목]

- ① 실적의 주요내용
 - 실적 방법 및 내용 등 실적의 우수성이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 ② 전공 및 진로와의 연계성
 - 전공과의 연계성, 향후 진로와의 연계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
- ③ 참여도 및 기여도
 - 실적 참여인원수, 실적 산출과정에서의 참여도, 역할, 기여도 등을 자유롭게 기재
 - ※ (예시) 저자수 총 5명 중 제1저자, 연구단계중 OO 과정의 자료조사 등을 담당하고 실제 논문 본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였음.
- ④ 기타
 - 연구 참여를 통해 느낀점 등 자유롭게 기술

<첨부> 실적증빙자료 (작성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작성요령 (작성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전공관련 활동실적 **기재순으로** 증빙자료 첨부

- 주요 인문·사회 전공관련 활동실적의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

*예 :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의 표지 및 목차(해당부분) 사본, 본인 논문수록부분 사본순으로 제출

* 본인의 컴퓨터에서 출력된 사본은 인정 안 됨, 반드시 공식적으로 발간된 것만 인정

- **실적 증빙자료는 하나의 파일로 온라인 신청시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

참고2

대학별 자체선발기준 수립 가이드라인

[대학별 장학생 자체 선발을 위한 심사 가이드(권고)]

- 필수 서류 : 학업 · 연구계획서, 저소득층 증빙서류 또는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권고 서류 : 연구논문실적서, 지도교수추천서 등
 - ※ 필수서류 외 서류는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또한 심사관련 서류는 대학별 자체적으로 보관·관리(실태 점검 시 증빙서류로 확인)
- 심사 기준 : 대상자의 우수성과 자질 및 성장가능성, 학문에 대한 열정 등 고려
 - * 대학 추천대상자 결정시 지도교수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 심사방법(서류, 면접 등)의 제한은 없음, 단 객관적 · 공정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추천절차 투명하게 진행
- 심사절차(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발절차 및 심사과정 학생 공고)
 - * 1단계 : 학생신청(학생→대학)
 - * 2단계 : 성적 및 저소득층 또는 미취업자 여부 평가
 - * 3단계 : 연구계획서(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학문 파급 효과) 블라인드 평가
 - * 4단계 : 학생 수행 의지 평가
 - ※ 3단계 및 4단계 심사위원 최소 5인 이상, 심사자 확인 도장 날인
- 심사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배점 | 측정지표 | 평가내용 |
|-----------------------|------|-----------------|---|
| 대학원생 학업수행 의지 평가 | (30) | 학업 · 연구계획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에 대한 열정(10) |
| | | 지도교수추천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학자로서의 자질과 성장 가능성(10) |
| | | 연구논문실적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활동 참여도(10) |
| 연구 계획의 우수성 | (60) | 연구주제 (연구계획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독창성(10) · 학문적 가치(10) · 연구내용의 필요성(10) |
| | | 연구방법 (연구계획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방법의 창의성 및 독창성(10) · 연구방법의 타당성(10) · 실행계획의 구체성(10) |
| 학문의 파급 효과 | (10) | 학문발전 공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성과 예상(5) · 학문의 파급효과 및 결과활용의 적정성(5) |

참고3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 II 유형) 시행계획, 환수규정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환수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 |
|---------|--|
| 수집.이용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시행(희망사다리 I·II 유형), 장학금 환수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사업 시행 및 장학금 환수 등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p>[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p>*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수집·이용할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구간(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 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 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용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
| 보유·이용 기간 |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 할</p> |

| | |
|------------------------------------|--|
| | <p>수 있습니다.</p> <p>*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p> |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
| 제공·조회 대상기관 | <p>■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련 근로기관(근로지 포함) 및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I·II 유형)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제공·조회의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 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I·II 유형) 장학금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
|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 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용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균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을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p> |
| 제공·조회 동의 여부 |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신용등급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p>*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p> |
|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장애인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 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금여지금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 | |
|------------------|---|
|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4**신청인 동의서****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본인은 국가장학금(재단 장학금 포함) 신청인으로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는全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신청불가)로서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4. 본인은 대학원 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대학원생지원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6.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가. 본인은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영구 탈락됨을 인지합니다.
 - 나. 본인은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저소득층 자격 상실 또는 4대보험 가입(취업) 사실이 발견 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을 반환 하겠습니다.(단, 시간강사의 경우 장학사업 지원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다. 본인은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BK21+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형사업 연구장학금 (근로성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 지원 포함) 수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고 영구 탈락됨을 인지합니다.
 - 라. 장학사업 지원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성적미달)”, “학업변동(휴학, 전과, 군입대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마. 재학기간 중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제출서류(저소득층 증빙서류 또는 4대보험 확인서 등)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겠습니다.

2.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소득구간(분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소득구간(분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회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 구분 | 종류 |
|--------------|---|
| 학자금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
| 장학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
| 중복지원 예외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6. 업무처리지침 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장학금 탈락 및 지원중단

- ① 장학생이 계속지원 기준 미달시(성적미달, 저소득층 자격 상실 또는 4대 보험 가입 시, BK21+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형사업 연구장학금 수혜 시)
→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금 자격 영구탈락
- ②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저소득층 자격 상실 또는 4대 보험 가입(취업)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환수(단, 시간강사의 경우 장학사업 지원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③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BK21+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형사업 연구장학금(근로성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 지원 포함) 수혜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환수
- ④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 지원 장학금 전액 환수
- ⑤ 자퇴, 제적, 학사징계, 학교변경, 전과, 휴학(질병, 천재지변, 군입대, 출산 등에 의한 휴학 포함)의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당해학기 장학금 환수와 동시에 장학생 자격상실
- ⑥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